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293
----------	-------

발의연월일 : 2025. 9 25.

발 의 자 : 김예지 · 서미화 · 김소희
박덕흠 · 김선교 · 서천호
남인순 · 최수진 · 강민국
송석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족 등 보호의무자에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의입원이 가능함. 2024년 기준, 전체 비자의입원 중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74%에 달함. 그러나 다수의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는 입원과정에서 가족관계가 훼손되어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정신질환자는 입원과정에서 생긴 트라우마로 인해 재입원이나 제대로 된 치료가 어려워지고, 보호의무자는 과도한 부담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이들 모두 보호의무제도 폐지 및 정신질환국가책임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정신질환자 본인의 신청과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입원이 결정되는 ‘동의입원’은 당사자 의사 존중이라는 도입 취지와는 달리 퇴원 시에도 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으로 전환되는 등 사실상 강제입원의 연장으로 악용되고 있음.

일각에서는 다른 나라처럼 사법입원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판사 한 명이 맡는 재판의 수가 다른 나라보다 2~5배 높아 사법입원 심사가 자칫 형식적 심사로 이어질 수 있어 현행 입원 제도의 대안이 되기는 어려움.

이에 보호의무자의 보호의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과 동의입원 제도를 폐지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및 입원적합성심사 등의 제도를 보완하여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39조·제40조·제42조·제43조 삭제 및 제44조, 제45조, 제48조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그 보호의무자”를 “정신질환자등의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이하 “후견인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보호의무자”를 “후견인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호의무자”를 “후견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보호의무자”를 “후견인등”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이하 “보호의무자”라 한다)”를 “후견인등”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제41조제2항, 제42조제2항 본문, 제43조제7항·제9항 본문”을 “제4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제41조제2항, 제42조제2항 본문, 제43조제7항·제9항 본문”을 “제41조제2항”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제1호 중 “제41조제2항, 제42조제2항 본문, 제43조제7항·제9항 본문”을 “제41조제2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 중 “제41조제2항, 제42조제2항 본문, 제43조제7항·제9항 본문”을 “제41조제2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제41조제3항 및 제42조제4항”을 “제41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보호의무자가”를 “후견인등이”로, “보호의무자임을”을 “후견인등임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보호의무자가”를 “후견인등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보호의무자”를 “후견인등”으로 한다.

제39조 및 제4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1조제3항 중 “2개월”을 “1개월”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한 사람에게 언제든지 퇴원등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구두, 서면, 전자우편 그 밖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42조 및 제4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4조의 제목 중 “입원”을 “입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질환자의 후견인등 또는 정신질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경찰관(「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찰관(「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급대원(「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입원을”을 “입원등을”로, “보호의무자”를 “후견인등”으로, “입원”을 “입원등의”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입원시킨”을 “입원등을 시킨”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입원할”을 “입원등을 할”로, “입원을”을 “입원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입원”을 “입원등의”로, “보호의무자”를 “후견인등”으로, “입원이”를 “입원등이”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입원”을 “입원등”으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이하 “구급대원”이라 한다)”을 “구급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제3항의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람을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에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경우
2. 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위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어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⑩ 제4항에 따른 입원등의 기간은 최초로 입원등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1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5조제1항 중 “제43조 또는 제44조”를 “제4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일”을 “24시간”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제43조 및 제44조”를 “제4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3조 및 제44조”를 “제44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5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정신건강 관계 공무원

6. 동료지원인

7. 인권전문가 등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8. 정신질환자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이 경우 제3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7조제3항 전단 중 “1개월 이내에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을 “14일 이내에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장 및 입원등을 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정신의료기관등”을 “지정정신의료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입원

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을 때 입원등을 한 사람에게 입원심사소위원회에서 제38조의2에 따른 절차조력인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48조제1항 중 “정신의료기관등”을 “지정정신의료기관”으로,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신의료기관등”을 각각 “지정정신의료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정신의료기관등에”를 “지정정신의료기관에”로, “정신의료기관등의”을 “지정정신의료기관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정신의료기관등”을 “지정정신의료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정신의료기관등”을 “지정정신의료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정신의료기관등”을 “지정정신의료기관”으로 한다.

③ 입원등을 한 사람이 제2항제1호에 따른 면담을 할 때에는 제38조의2에 따른 절차조력인 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제49조 중 “정신의료기관등”을 “지정정신의료기관”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를 “제41조 또는 제44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보호의무자”를 “후견인등”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보호의무자 등의”를 “후견인등의”로 한다.

제52조제1항 본문 중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를 “제41조, 제44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보호의무자”를 “후견인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호의무자”를 “후견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보호의무자가”를 “후견인등이”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보호의무자와”를 “후견인등과”로 한다.

제53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10명 이상 20명”을 “15명 이상 20명”으로, “6명 이상 12명”을 “10명 이상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심사대상자의 퇴원계획 및 퇴원지원

라. 정신건강 관계 공무원

6.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거나 경험한 사람

7.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인권전문가

8. 정신질환자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54조제2항 전단 중 “5명 이상 9명”을 “8명 이상 12명”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위원은 제53조제5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제55조제1항 중 “보호의무자는”을 “후견인등은”으로 한다.

제5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43조제6항 및 제55조제1항”을 “제55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에는 입원등을 한 사람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7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호의무자”를 “후견인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할 때에는 심사 대상자에게 제38조의2에 따른 절차조력인 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제5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43조제6항 및 제55조제1항”을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5. 제41조의 자의입원등으로의 전환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3조제6항에 따른 심사 청구의 대상인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 제5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한 사람”을 “제5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한 사람”으로, “보호의무자는”을 “후견인등은”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전단 중 “정신의료기관의 장”을 “정신의료기관의 장, 제5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 또는 제60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를 한 사람, 해당 정신질환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호의무자”를 “후견인등”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제43조 또는 제44조”를 “제44조”로, “보호의무자”를 “후견인등”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제43조와 제44조”를 “제44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호의무자와”를 “후견인등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1호”로 한다.

제65조제1항제4호 중 “보호의무자”를 “후견인등”으로 한다.

제66조제5항 단서 중 “보호의무자(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퇴원등을 할 사람 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를 “후견인등(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퇴원등을 할 사람 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보호의무자”를 “후견인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보호의무자가”를 “후견인등이”로 한다.

제69조제2항 중 “보호의무자”를 “후견인등”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본문 중 “보호의무자에게”를 “후견인등에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보호의무자의”를 “후견인등의”로 한다.

제79조 중 “보호의무자”를 “후견인등”으로 한다.

제84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41조제2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9항”을 “제41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보호의무자”를 “후견인등”으로 한다.

제86조제2호 중 “제41조제3항 또는 제42조제4항”을 “제41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9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①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등이 입원등을 하거나 사회적응을 위한 훈련을 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정신질환자등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권리 및 권리행사 방법을 알리고, 그 권리행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정신건강증진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정신질환자등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알릴 권리 및 권리행사 방법과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류는 정신질환자등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되거나 고지되어야 한다.	제6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① ----- ----- ----- -----정신질환 자등의 「민법」에 따른 후견 인 또는 부양의무자(이하 “후 견인등”이라 한다)----- ----- ----- -----후견인등----- ----- ----- -----.
②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등이 퇴원 및 퇴소(이하 “퇴원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때에는 정신질환자등과	② ----- ----- ----- -----

그 보호의무자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역할 및 이용절차 등을 알리고,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신보건수첩 등 각종 서류를 정신건강증진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④ (생략)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등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알릴 권리의 종류·내용, 고지방법 및 서류비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 ③ (생략)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이하 “보호의무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 ⑨ (생략)

--후견인등--

③·④ (현행과 같음)

⑤ -----후견인등-----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후견인등-----.

⑤ ~ ⑨ (생략)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④ _____

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생략)

2. 제41조제2항, 제42조제2항
본문, 제43조제7항·제9항 본
문, 제47조제4항 또는 제62조
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신
질환자를 퇴원이나 임시 퇴원
을 시키지 아니한 경우

3. ~ 5. (생략)

⑤ ~ ⑦ (생략)

제22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정신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그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현행과 같음)

2. 제41조 제2항-----

3. ~ 5. (현행과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22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1. <u>제41조제2항, 제42조제2항</u> <u>본문, 제43조제7항·제9항</u> 본 문,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소나 임시 퇴 소를 시키지 아니한 행위 2. (생략) ④ ~ ⑦ (생략) 제25조(정신요양시설 사업의 정 지, 설치허가 취소 등) ①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 장·군수·구청장은 정신요양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 1.·2. (생략) 3. <u>제41조제2항, 제42조제2항</u> <u>본문, 제43조제7항·제9항</u> 본 문,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소 또는 임 시 퇴소를 시키지 아니한 경 우 4. ~ 6. (생략) ② ~ ⑤ (생략) 제30조(기록보존) ① 정신건강증 진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 <u>제41조제2항</u>----- ----- ----- 2.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25조(정신요양시설 사업의 정 지, 설치허가 취소 등) ① --- ----- ----- ----- ----- ----- -----. 1.·2. (현행과 같음) 3. <u>제41조제2항</u>----- ----- ----- 4. ~ 6.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기록보존) ① ----- -----
--	--

사항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
료기록부 등에 작성·보존하여
야한다.

1. (생 략)

2. 제41조제3항 및 제42조제4항
에 따른 퇴원등의 의사 확인

3. 제42조제2항에 따른 퇴원등
의 신청 일시 및 퇴원등의
거부 사유

4. 제43조제6항에 따른 입원등
의 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
청구 및 결과

5. ~ 10. (생 략)

③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의료법」 제21조에도 불구하
고 보호의무자가 입원등을 한
사람의 동의서와 보호의무자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
출하고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사본발급 등 그 내용확
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
야한다. 다만, 입원등을 한 사
람이 사망하거나 의사능력이
미흡하여 보호의무자가 입원등
을 한 사람의 동의를 받을 수

-----.

1. (현행과 같음)

2. 제41조제3항-----

<삭 제>

<삭 제>

5. ~ 10. (현행과 같음)

③ -----

-----후견인등이-----
-----후견인등임
을-----

-----.

-----후견인등이-----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그 동의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입원등을 한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제39조(보호의무자) ①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4. 미성년자
5. 행방불명자

-----.

④ -----

-----후견인등

-----.

<삭 제>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
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
사이의 보호의무의 순위는 후
견인·부양의무자의 순위에 따
르며 부양의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 제976조에
따른다.

제40조(보호의무자의 의무) ① 보
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
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 및 요
양과 사회적응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
는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입원
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를 최
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정신건
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의료기
관등에서 정신질환자의 퇴원등
이 가능하다고 진단할 경우에
는 퇴원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삭 제>

한다.

③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정신질환자의 재산상의 이익 등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를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자의입원등) ①·② (생략)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자의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입원등을 한 날부터 2개월마다 퇴원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 설>

제42조(동의입원등) ① 정신질환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

제41조(자의입원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개월-----

-----.

④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한 사람에게 언제든지 퇴원등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구두, 서면, 전자우편 그 밖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삭 제>

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 신청서를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할
수 있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
항에 따라 입원등을 한 정신질
환자가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
에는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
야 한다. 다만,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지 아
니하고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
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
단 결과 환자의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 한정하여 정신의료기관등
의 장은 퇴원등의 신청을 받은
때부터 72시간까지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고, 퇴원등을 거부
하는 기간 동안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입원등으로 전
환할 수 있다.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2
항 단서에 따라 퇴원등을 거부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 사

유 및 제55조에 따라 퇴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
항에 따라 입원등을 한 정신질
환자에 대하여 입원등을 한 날
부터 2개월마다 퇴원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보호의무자 간 입원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39조제2항의 순위에 따른 선
순위자 2명 이상을 말하며, 보
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
는 1명으로 한다)이 신청한 경
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
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
한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
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할 때 보호의무자로
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삭 제>

바에 따라 입원등 신청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등 필요성에 관한 진단은 해당 정신질환자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각각에 관한 진단을 적은 입원등 권고서를 제1항에 따른 입원등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2. 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위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어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결과 정신질환자가 제2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④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진단 결과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계속 입원등이 필요하다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국립·공립의 정신의료기관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치료를 위한 입원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입원등의 기간은 최초로 입원등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3개월 이후의 1차 입원등 기

간 연장: 3개월 이내

2. 제1호에 따른 1차 입원등 기간 연장 이후의 입원등 기간 연장: 매 입원등 기간 연장 때마다 6개월 이내

⑥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5항 각 호에 따른 입원등 기간의 연장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 기간을 연장할 때마다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연장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1.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국립·공립의 정신의료기관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가 입원등 기간을 연장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일치된 진단을 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이하 “신청 보호의무자”라 한다) 2명 이상(제1항에 따른 입원등 신청 시 신청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었던 경우에는 1명으로 한다)이 제5항에 따른 입원등의 기간 연장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⑦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입원등 기간 연장의 심사 청구에 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59조(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퇴원등 또는 임시 퇴원등(일시적으로 퇴원등을 시킨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입원등 여부를 결정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명령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정신질환자를 지체 없이 퇴원등 또는 임시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⑧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

항이나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원등을 시키거
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하였
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입원등을
한 사람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 및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⑨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
원등을 한 사람 또는 보호의무
자가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
는 지체 없이 그 사람을 퇴원
등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
의료기관등의 장은 그 입원등
을 한 사람이 제2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원
등을 거부할 수 있다.

⑩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9
항 본문에 따라 입원등을 한
사람을 퇴원등을 시켰을 때에
는 지체 없이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야 하고, 제9항 단서에 따라 퇴
원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
체 없이 정신질환자 본인과 퇴
원등을 신청한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사실 및 사유와 제55조

에 따라 퇴원등의 심사를 청구
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청구
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⑪ 제4항 및 제6항제1호에 따
른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
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
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은 해당
지역의 정신의료기관등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부족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달리
정하여 진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44조(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
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
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

제44조(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등) ① 정신건강의학
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질환자의 후견인등 또는
정신질환자와 생계를 같이 하
고 있는 사람-----

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경찰관(「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제3항의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

② 경찰관(「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급대원(「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

③ (현행과 같음)

④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제3항의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람을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에 2주

구청장은 그 사람을 보건복지
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이하
“지정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
에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
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
게 지체 없이 입원 사유·기간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입원시킨 정
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
문의에게 그 사람의 증상을 진

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
원하게 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경우

2. 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
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위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어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
는 경우

⑤ -----

-----입원등을-----
-----후견인등-----

-----입원등의-----

-----.

⑥ -----
-----입원등을 시킨-----

단하게 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진단 결과 그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원할 필요가 있다는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치료를 위한 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⑧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입원 의뢰를 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계속하여 입원의 필요한 사유 및 기간, 제55조에 따라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청구 절차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

⑦ -----

-----입원등을 할-----

-----입원등을-----
-----.

⑧ -----

-----입원등의-----

-----후견인등-----
-----입원등
의-----

한다.

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진단하거나 입원을 시키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한 행동을 할 때에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이하 “구급대원”이라 한다)에게 호송을 위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⑩ (생략)

제45조(입원등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 등) ①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입원등을 시키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시킨 즉시 입원등을 한 사람에게 입원등의 사

-----.

⑨ -----

-----입원등-----

-----구급대원-----
-----.

⑩ 제4항에 따른 입원등의 기간은 최초로 입원등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1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⑪ (현행 제10항과 같음)

제45조(입원등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 등) ① 제44조---

유 및 제46조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의하여 입원적합성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두 및 서면으로 알리고, 입원등을 한 사람의 대면조사 신청 의사를 구두 및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제46조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입원등을 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인적사항, 입원등 일자, 진단명, 입원등 필요성, 대면조사 신청 여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46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입원등의 적합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21조에 따른 각 국립정신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국립정신병원등”이라 한다) 안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며,

-----.

② -----

24시간-----

-----.

제46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
-----제44조-----

각 국립정신병원등의 심사대상
관할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②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입
원심사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제
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입원등
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
여야 한다.

③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위
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각 국립정신병원등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
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정신건
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가.·나. (생 략)

다.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회
복한 사람

라. 그 밖에 정신건강 관계

-----.

② -----

제44조-----

-----.

③ -----

-----.

1. ~ 4. (현행과 같음)

5. -----

가.·나. (현행과 같음)

<삭 제>

라. 정신건강 관계 공무원

<u>공무원, 인권전문가 등 정신건강과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u> <신 설> <신 설> <신 설> ④ 입원심사소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후단 신설> ⑤ ~ ⑧ (생략) 제47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심사결과 통지 등) ① · ② (생략) ③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최초로 입원등을 한 날부터 <u>1개월 이내에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입원등의 적합</u>	6. 동료지원인 7. <u>인권전문가 등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u> 8. <u>정신질환자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u> ④ ----- ----- ----- ----- ---. <u>이 경우 제3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u>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47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심사결과 통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14일 이내에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장 및 입원등을 한</u>
--	--

또는 부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
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다.

④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3
항에 따라 입원등의 부적합 통
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입원
등을 한 사람을 지체 없이 퇴
원등을 시켜야 한다.

<신 설>

⑤ (생 략)

제48조(입원적합성의 조사) ① 입
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은 제47조제1항에 따라 입원심
사소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입원등을 한 사람이 대면조사

사람-----

-----.

-----.

④ 지정정신의료기관-----

-----.

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입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
을 때 입원등을 한 사람에게
입원심사소위원회에서 제38조
의2에 따른 절차조력인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
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48조(입원적합성의 조사) ① -

를 신청하거나 입원등의 적합성이 의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국립정신병원 등의 소속 직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에게 해당 정신의료기관등을 출입하여 입원등을 한 사람을 직접 면담하고 입원등의 적합성, 퇴원등의 필요성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원은 해당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한 사람 및 정신의료기관등의 종사자와의 면담
2.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한 사람의 진료기록 및 입원등의 기록의 제출
3. 정신의료기관등에의 출입 및 현장확인

-----지정 정신의료기관-----

-----하여야 한다.-----

② _____

_____ 지정 정신

의료기관 _____

_____ . _____

_____ 지정 정신의료기관 _____

_____ . _____

1.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지정정신의료기관의

2. 지정정신의료기관-----

3. 지정정신의료기관-----

4. (생 략)

<신 설>

③ (생 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원의 자격, 정신의료기관등의 출입, 면담 등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 등의 제척)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및 입원심사소위원회의 입원등의 심사에서 심사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입원등을 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위원은 제척(除斥)된다.

제50조(응급입원) 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41조부터

4. (현행과 같음)

③ 입원등을 한 사람이 제2항 제1호에 따른 면담을 할 때에는 제38조의2에 따른 절차조력인 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
-----지정정신의료기관-----

-----.

제49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 등의 제척) -----

-----지정정신의료기관-----
-----.

제50조(응급입원) ① -----

-----제41조 또는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
원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
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
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
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⑥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
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켰을 때
에는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
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이 필요한 사유·기간 및
장소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
지하여야 한다.

제51조(신상정보의 확인) ① 정신
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정신건강
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성명,
주소, 보호의무자 등의 신상정
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상정
보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
장에게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
청하여야 한다.

제44조-----

-----.

② ~ ⑤ (생 략)

⑥ -----

-----후견인등-----

-----.

제51조(신상정보의 확인) ① ---

-----후견인등의-----

-----.

제52조(퇴원등의 사실의 통보)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41조
부터 제44조까지 또는 제50조
에 따라 정신의료기관등에 입
원등을 한 사람이 퇴원등을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퇴원등의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관할
지역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
는 경우에는 보건소의 장을 말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
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퇴원등
을 할사람 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본인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퇴원등의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통보하기 전에 미리 그 사실을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퇴원등을 할 사람 본

②·③ (현행과 같음)

[illegible]

② (현행과 같음)

③

후견인등

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가 제3항에 따라 고지받은 퇴원등의 사실 통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할 수 없다. 다만, 제54조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생략)

⑥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퇴원등의 사실을 통보받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해당 퇴원등을 할 사람 또는 보호의무자와 상담하여 그 사람의 재활과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3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건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정신건강심

-----.

④ -----
-----후견인등이-----

-----.

-----.

⑤ (현행과 같음)

⑥ -----

-----후견인등과-----

-----.

제53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

의위원회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이 없는 시·군·구에는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한다.

1. 제43조제6항에 따른 입원등기간 연장의 심사 청구

1의2. ~ 4. (생략)

<신설>

5. (생략)

④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6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 및

-----.

<단서 삭제>

② (현행과 같음)

③ -----

-----.

<삭제>

1의2. ~ 4. (현행과 같음)

5. 심사대상자의 퇴원계획 및 퇴원지원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④ -----
15명 이상 20명-----

-----10명 이상 15명-----

-----.

-----.

⑤ -----

----- . <단서>

삭제>

1. ~ 4. (현행과 같음)
5. -----

- 가. 나. (생략)
- <삭제>
- 라. 정신건강 관계 공무원

<신 설>

<신 설>

<신 설>

⑥ ~ ⑧ (생략)

제54조(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생략)
②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및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이하 “정신건강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제53조 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각 1명 이상, 같은 항 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거나
경험한 사람

7.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
고 인정되는 인권전문가

8. 정신질환자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54조(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8명 이상
12명-----.

이 경우 위원은 제53조제5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55조(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①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의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제76조에 따른 작업치료의 적정성 여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생략)

제56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의 회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3조제6항 및 제5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청구 내용을 소관 정신건강심의위원회 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신설>

③·④ (현행과 같음)

제55조(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① -----

-----후견인등은-----

-----.

② (현행과 같음)

제56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의 회부) ① -----
-----제55조제1항-----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에는 입원등을 한 사람에게 변

제57조(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 ① (생략)

②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할 때에는 심사 대상자 및 심사 대상자가 입원등을 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55조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의 심사를 할 때에는 그 의견을 듣지 아니할 수 있다.

② _____

----- . <단서 삭제>

③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할 때에는 「의료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나 심사 대상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에게 진료기록부와 제3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
는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청
구 또는 동의로 갈음할 수 있
다.

③ (생략)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3조제6항 및 제55조제1항에

다른 심사 청구를 한 사람, 해당 정신질환자 및 해당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결정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와 그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0조(재심사의 청구 등) ① 제43조제6항에 따른 심사 청구의 대상인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 제5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한 사람, 제64조제3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결정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연장 결정을 받은 정신질환자 및 그 보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③ (현행과 같음)

④ -----

제55조 제1항-----

제60조(재심사의 청구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한 사람-----

-----후견인등은

해당하는 경우에 시·도지사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62조(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해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4조제7항에 따라 입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최초로 입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원을 해제하여야 하며, 입원의 해제 사실을 그 정신질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정신질환자를 퇴원시켜야 한다.

② (생략)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2조(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해제) ① -----

-----정신의료기관의 장,
제5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
또는 제60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를 한 사람, 해당 정신
질환자-----

-----.

② (현행과 같음)

③ -----

후
견인등

[illegible]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4조(외래치료 지원 등) ① --
-----제44조-

제44조에 따라 입원을 한 정신
질환자 중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입원을 하기 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
는 행동(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행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사람에 대
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
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외래치료 지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정신질환자 본인 및 그 보호의
무자와 외래치료 지원을 청구
한 정신의료기관의 장, 정신건
강복지센터의 장 및 외래치료
지원을 하게 될 정신의료기관
의 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⑥ (생략)

⑦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후견인등과-----

-----.

⑤·⑥ (현행과 같음)

⑦ -----

제5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철회하고,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42조에 따라 동의입원등을
신청하게 하는 것

3. 보호의무자에게 제43조제1항
에 따른입원등 신청을 요청하
는 것

4. 제44조제7항에 따라 입원하게 하는 것(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⑧ ~ ⑩ (생략)

제65조(무단으로 퇴원등을 한 사
람에 대한 조치) ① 정신의료
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하고

[illegible]

1.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4. 제1호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65조(무단으로 퇴원등을 한 사람에 대한 조치) ① -----

[illegible]

1. ~ 3. (현행과 같음)

4. 후견인등-----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6조(보고·검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후견인등(정
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퇴원등
을 할 사람 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만

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통보하는 것에 동의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⑥ (생략)

⑦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퇴원등의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보건소의 장에게 통보하기 전에 미리 그 사실을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⑧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가 제7항에 따라 고지받은 퇴원등의 사실 통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통보를 할 수 없다. 다만,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생략)

제69조(권익보호) ① (생략)

② 누구든지 정신질환자, 그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녹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이-----

⑥ (현행과 같음)

⑦

후견인등

⑧ 후견인등이

⑨ (현행과 같음)

제69조(권익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 후
견인 등 -----

있다.	-----.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4조(벌칙) -----
1. 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u>정신질환자를 유기한 자</u>	-----
2. 제41조제2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9항 또는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원등을 시키지 아니한 자	-----
3. 제43조제7항을 위반하여 <u>퇴원등의 명령 또는 임시 퇴원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u>	-----.
4. ~ 11. (생략)	<삭 제>
12. 제73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체의 결정 없이 특수치료를 하거나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한 사람 또는 <u>보호의 무자의 동의 없이 특수치료를 한 자</u>	2. 제41조제2항-----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삭 제>
	4. ~ 11. (현행과 같음)
	12. -----

	-----후견
	<u>인등</u> -----

	제86조(벌칙) -----

	-----.

1. ~ 1의4. (생 략)	1. ~ 1의4. (현행과 같음)
2. 제41조제3항 또는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퇴원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2. 제41조제3항----- ----- ----- -----
3. 제4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입원등 신청서나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	<삭 제>
4. 제43조제6항을 위반하여 입원등 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 청구기간을 지나서 심사 청구를 하거나, 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입원등 기간을 연장하여 입원등을 시킨 자	<삭 제>
5. ~ 11. (생 략)	5. ~ 11. (현행과 같음)
제8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9조(과태료) ①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퇴원등 거부사유 및 퇴원등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삭 제>
5. 제43조제8항을 위반하여 입	<삭 제>

<u>원등 또는 입원등 기간 연장</u> <u>의 사실 및 사유를 통지하지</u> <u>아니한 자</u> 6. 제43조제10항을 위반하여 퇴 <u>원등 거부 사실 및 사유나 퇴</u> <u>원등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u> <u>는 사실 및 그 청구절차를 통</u> <u>지하지 아니한 자</u> 7. ~ 10. (생 략) ② (생 략)	<u><삭 제></u> 7. ~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